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
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조명래 (환경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실무적 검토·조정 등을 위해 두고 있는 낙동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위원 중 한국수자원공사의 실무위원은 관련 상임이사로 규정하고 있으나, 낙동강수계 지역 현안의 실질적 논의를 위해 해당 수계의 임직원이 실무위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
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

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13명”을 “11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「한국수자원공사법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의 임직원 중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지명하는 사람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실무위원회) ① (생 략)	제6조(실무위원회) ① (현행과 같 음)
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1 명을 포함한 <u>13명</u> 의 실무위원으 로 구성한다.	② ----- ----- <u>11명</u> ----- -----.
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낙동 강유역환경청장이 되고, 실무위 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 람으로 한다.	③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<u>한국농어촌공사 · 한국수자원 공사 ·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관 련 상임이사</u>	5. 「 <u>한국수자원공사법</u> 」에 따 라 설립된 <u>한국수자원공사의 임직원 중 한국수자원공사 사 장이 지명하는 사람</u>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환경부 물정책총괄과	
연 락 처	(044) 201 - 7152